

학교도서관 문제의 해법은...

‘선부른 독서교육 강화, 본질 위배’ 사서교사 배치 · 학교도서관법 제정 등 선결 과제

고정원_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사무국장



도서관 활용 수업체계와 사서교사의 배치, 적절한 리모델링,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서가 학교도서관 발전의 요건이다. (사진은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10월 24일 오후2시 서울의 00중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개관식이 진행되었다. 교육청으로부터 리모델링 지원금 5,000만원으로 교실 두 칸을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한 학급의 수업이 가능한 공간과 각종 영상장비와 컴퓨터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직 책은 많지 않았다. 최고가의 깔끔한 서가이지만 낡은 책도 많이 섞여 있었다.

화려한 개관식을 마친 후 도서관담당교사는 올 한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사회과 수업 20시간, 3학년 담임업무를 하면서 도서관 업무까지 하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사실 도서관업무를 신경쓰느라 본연의 수업준비와 아이들 진학상담 등 담임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도서관 환경은 좋아

졌지만 정작 책 구입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었다. 다른 학교 구입도서목록을 참조하고 교육청에서 발간된 독서매뉴얼에 소개된 책을 위주로 도서구입 주문을 했다. 책을 제대로 못 고른 것이 아쉬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실 정작 앞으로가 더 고민이라고 한다. 도서관에 대한 기대수준은 한껏 높여 놓았지만 이 도서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는 앞이 캄캄하다. 학교는 미리 약속했던 계약직 사서조차도 둘 수 없는 상황이다. 계획에는 도서관활용수업 등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내 수업도 바쁜데 다른 교사들의 수업을 챙겨줄 수도 없다. 학부모들에게 도움요청을 하는 것도 고려중이지만 지역 여건상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점심시간 등에만 문을 열고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 낭비라는 생각도 든다. 한편 도서관담당교사는 내년에는 부담스런 도서관업무를 꼭 다른 교사에게 넘길 작정을 하고 있다.>

이것은 올해도 약 1,200개의 학교가 도서관 리모델링을 진행했는데 그런 학교 중의 평범한 학교와 도서관담당교사의 모습이다. 화려한 도서관 외양은 있으나 그 속의 책을 제대로 갖추기는 쉽지 않다. 도서관활용수업을 이야기하나 실제 자료가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사서는 거의 없거나 있어도 임시직 계약직 형태로 신분도 불안하다. 이런 문제는 국가적으로 사서교사를 배치해서 해결해주어야 되는 일이지 더 이상 학교의 임시방편이나 도서관담당교사들의 교과수업이나 담임업무를 희생해가면서 도서관업무에 매달려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학교에 과학교사도 없고 과학실도 낙후되어 있다면 당연

히 과학교사부터 배치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과학교사는 없는데 과학실 리모델링부터 하고 계속 과학교사 없이 과학을 좋아하는 학부모들이 자원봉사하면서 과학실을 운영하고 과학실을 활용한 실험수업까지 하라고 한다면 말이 될까. 바로 이런 모습이 도서관의 현실이다. 최대한 양보해서 이미 만들어놓은 도서관, 지금부터라도 리모델링된 도서관을 운영할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이것조차도 여의치 않은 것이 학교도서관의 현재 모습이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서교사의 배치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도 사서교사배치는 강력히 요구되었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도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사서교사 배치를 요구하였다.** 사서교사 배치의 법적 근거가 없는가하면 1988년 당시 문교부가 다음과 같이 사서교사 배치기준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도 10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8년 8월 15일부터는 아래기준을 허송세월하고 지금은 법조항을 거의 사문화시켜 버렸다.

도서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2506호) 제4조(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

사서교사의 배치기준

구분	배치기준
초등학교	초등학교에는 36학급 미만인 경우 사서교사·겸임사서교사(사서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급이나 교과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또는 실기교사(사서)중 1인을 두며, 36학급 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둔다.
중·고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24학급 미만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2인을 두며, 24학급 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2인을 두거나 사서교사와 겸임사서교사 각 1인 또는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둔다.

이렇게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화한 대한민국의 법 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 배치율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학교수	사서교사배치학교수	배치비율
초등학교	5,541	59	1.1
중학교	2,900	49	1.7
고등학교	2,080	174	8.4
특수학교	141	2	1.4
계	10,662	284	2.7

이렇게 학교도서관의 운영을 담당할 전임 사서교사가 고작 3퍼센트의 배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97퍼센트의 학교는 일반 교사들이 수업과 담임을 하면서 도서관을 운영하니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다. 이런 현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출판문화, 독서교육기반을 왜곡시키는 결정적 핵심 요인인 것이다.



지난 9월 30일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된 '학교도서관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사진제공 : 도서관협회)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충분한 학습자료와 독서자료가 학교도서관과 전담교사를 통해 제공이 된다면 또 공교육의 과제가 학교도서관안에서 일정수준 해결이 된다면 학생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사교육 능력에 따라 수행평가나 과제해결 수준이 달라지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기에 학교의 도서관을 활용하는 교육은 이런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기초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학교급식법에 의한 영양교사배치와 단체급식의 정착은 학생들의 집안 형편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영양을 보장하는 점심식사를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런 노력에는 농림수산부와 농민단체 등의 배후지원과 여론 조성이 큰 힘이 되었다.

지금과 같은 학교도서관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독서나 수업, 수행평가 등에 대한 지원을 학교도서관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기본 여건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부른 독서 교육강화는 또 하나의 사교육부담을 국민들에게 줄 뿐이다. 허울뿐인 학교도서관의 내용을 채워줄 전담 사서교사 배치는 국가가 학교를 세울 때 기본적으로 담당할 의무이며, 이는 출판계, 문화관광부, 문화계의 네트워크적인 연대와 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도서관 관련법 제정과 이후의 관심과 감시 등도 관철돼야 할 사항이다. **★조**

* 이희수. 2002.〈학교도서관활성화 대책 수립 계획 연구〉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개발 정책연구 2002-5)35-36쪽
 ** 변우열 외. 2003.〈2003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평가〉 교육인적자원부. 242-247쪽
 *** 2005년 교육통계연보